#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87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.

발 의 자:백혜련·박광온·홍성국

오영환 · 신동근 · 박영순

김영진 · 양기대 · 홍정민

김진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"특례시"로 명칭 부여하고, 행정·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이 신설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개정, 2022.1.13. 시행)됨에 따라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(안 제40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).

- 나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「지방자치법」에서 명칭 부여한 "특례 시"로 규정함(안 제40조제1항제2호, 제41조, 제42조제1항·제3항 및 제43조제3항).
- 다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(안 제41 조).

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·징수,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·운영, 관광(단)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,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, 폐기 물처분부담금 부과·징수,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, 자동차 공회전 제한,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·징수(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 17호까지 신설)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"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"를 "다음 각 호의 기준 대도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- 2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

제41조의 제목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"를 "특례시"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"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"을 "특례시의 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·징수, 배분 및 사용,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
- 1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 조,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·구성, 중 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관할

- 1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제56조,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 등 지정, 조사·측량,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수립·승인취소,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, 관광 조성사업 준공검사 13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9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·징수
- 14. 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 과·징수
- 15.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 수립
- 16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
- 17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5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· 징수

제42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" 를 각각 "특례시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중 "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"를 "특례시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)	제40조(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)
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	① <u>다</u>
<u>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</u>	음 각 호의 기준 대도시
<u>이상 대도시</u> 의 행정·재정 운영	
및 지도・감독에 대하여는 그	
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	
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	
있다. 다만, 인구 30만 이상인	
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	
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	
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</u>
	2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
	"특례시"라 한다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1조(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	제41조( <u>특례시</u> 의 사무특례) <u>특례</u>
의 사무특례) <u>특별시와 광역시</u>	<u>시의 장</u>
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	
<u>시의 장</u> 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	
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	
무를 처리할 수 있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10.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
	관한 특별법」제11조의4부터
	제1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
	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·
	징수, 배분 및 사용, 지방광역
	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
<u>&lt;신 설&gt;</u>	1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
	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	<u>률」 제49조, 제51조 및 제53</u>
	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
	회 설치・구성, 중앙토지수용
	위원회 재결 관할
<u>&lt;신 설&gt;</u>	<u>12.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, 제5</u>
	3조, 제54조, 제56조, 제58조
	및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
	등 지정, 조사·측량, 관광지
	등 조성계획의 수립ㆍ승인취
	소,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,
	관광 조성사업 준공검사
<u>&lt;신 설&gt;</u>	13.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
	9조제5항에 따른 환경개선부
	<u>담금의 부과·징수</u>
<u>&lt;신 설&gt;</u>	14.「자원순환기본법」 제21조
	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
	금의 부과·징수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15.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
	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6
	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
	성계획 수립
<u>&lt;신 설&gt;</u>	16.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9조
	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
<u>&lt;신 설&gt;</u>	17.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
	제5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
	<u>금</u> 부과·징수
제42조(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	제42조( <u>특례시</u> 의 보조기관 등) ①
보조기관 등) ① 「지방자치	
법」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	
고 <u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 의	<u>특례시</u>
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. 이 경우	
부시장 1명은 「지방자치법」	
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	
반직,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	
공무원으로 보(補)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, 제90	③
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<u>인</u>	
<u>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 의 행정기	례시
구 및 정원은 인구, 도시 특성,	
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	

현 행	개 정 안
로 정할 수 있다.	
제43조(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)	제43조(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 의	③ <u>특례시</u>
경우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제1	
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	
세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	
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	
세로 한다.	